



본란의 기사는 미국내 통상자문회사인 Manchester Trade社의 통상보고서 및 EC주재 변호사의 보고서를 기재한 것이며 세부사항에 대한 문의는 본會國際部(TEL:553-0941/7)로 연락 바랍니다.

1.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산 CDP A/D 제소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산 CDP에 대한 반덤핑 제소의 루머는 6월에 시작되어 실제로 '92. 6월 12일 반덤핑 조사가 개시 되었다. 관심을 끄는 것은 한국이 본 반덤핑 제소에 직접 관련된 CDP의 원산지 문제이다.

제소자는 CDP가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서 생산되었다 하더라도 이들 제품의 원산지는 한국 또는 일본이라고 주장하고 제소자의 주장결과로 EC집행위는 CDP의 원산지에 특히 초점을 둘 것이며 또한 원산지에 대한 판정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국 및 일본산 CDP에 대한 반덤핑 재심(Review)에 해당될 것이다. 한국의 어떤 업체도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서 CDP를 생산하지 않았다.

2. 한국산 CDP 부품 A/D 제소 루머

Philips사가 한국산 CDP의 특정 주요부품(Ke y parts)에 대한 반덤핑 제소를 할 것이라는 루머가 있었으나 현재 미확인 상태이다.

부품에 대한 반덤핑 제소는 주로 인켈社 처럼 EC 역내에 현지 생산공장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생산업체들에게 영향을 줄 것이다.

3. 한국산 위성방송수신기 A/D 제소 루머

한국산 위성방송수신기(Satellite Video Receivers)에 대한 반덤핑 제소의 루머를 조사하였으나 현재 제소되지 않았다.

한국의 동제품 수출실적은 하기와 같다.

EC, 한국산 위성방송수신기(SVR)
수출실적(CN 8529 10 31)

[단위 : 1,000 ECU]

1988	1989	1990	1991	'92. 1~3
591	3,805	5,798	11,513	583

(Source : Eurostat)

4. 한국, 대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산 콘덴서(Capacitors) A/D 제소

'92. 6월 2일 EC집행위는 일본산 Capacitors에 반덤핑 잠정관세를 부과했다.

'92. 6월 10일 열린 반덤핑 자문위(Anti-Dumping Advisory Committee) 미팅에서 회원국들은 한국, 대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산 Capacitors에 대한 반덤핑을 조사키로한 EC집행위의 제안에 동의했다.

일본산 Capacitors의 반덤핑 제소 Scope는 "160V 또는 이상의 18,000~310,000UC(Micro-Coulombs)의 대형 알루미늄 전해 콘덴서(Large Electrical Capacitors, Aluminium Electrolytic)이며 (19×20 mm, CN Code Ex 8532 22 00), 제소자 다음과 같다.

— B. H. Components Ltd (영국)

Nederlandse Philips Bedrijven BV

(네덜란드)

— Roederstein GmbH (독일)

이번 새로운 반덤핑 제소는 일본산 제품과 동일한 Scope을 포함 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이번 반덤핑 제소는 주

로 조사중인 한국과 기타국가에 공장을 가지고 있고 이들국가에서 Capacitors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를 우회할 수 있는 일본업체에 목표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번 반덤핑 제소 또한 한국산 제품에도 영향을 줄 것이며 '92. 8월 또는 9월에 조사가 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5. 한국, 홍콩산 3.5" Micro-Disks A/D

'92. 6월 10일 열린 반덤핑 자문위 미팅에서 제소문제가 협의 되었다.

이번 한국 및 홍콩산 3.5"Micro-Disks에 대한 반덤핑 케이스는 일본, 대만, 중공산이 이미 제소된 반덤핑 케이스의 확대적용이다.

EC집행위는 EC산업에 하기사항의 이유로 제조장을 다시 작성할 것을 요청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반덤핑 조사가 8월말 이전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았다.

- 제조장은 이전의 데이터(Old Data)에 근거하였으며 Update 되어야 한다.
- 정상가격 계산은 EC제조업체의 가격에 근거하였으나 가능하다면 한국 및 홍콩의 가격/코스트에 근거하여야 한다.

6. 한국산 DRAMs A/D

한국산 DRAMs에 대한 반덤핑 조사는 '91. 3월 개시되었으며 '91. 12월 한국에서 실사 있었다.

'92. 5월 EC집행위는 덤핑마진 계산에서 사용한 계산방법을 관련 3사에 Disclosure 했다. 사용한 계산방법은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원칙(GAAP)과 다른 원가산정 공식을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높은 덤핑마진을 초래시켰다.

EC집행위가 한국의 GAAP를 인정치 않은 최초의 사례이며 기존의 모든 EC A/D 케이스에서 한국의 GAAP는 EC Institutionso에 의해

인정되었다.

이러한 인정은 미국 상무부와 같은 한국의 다른 주요 교역국의 관행과 일치하는 것이다.

DRAMs 케이스에서 한국 GAAP의 불안정은 한국 정부에서도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핵심사안이다.

이러한 불인정은 자의적인 덤핑판정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며 향후 이러한 예측도 불가능해하기 때문이다.

수출국의 GAAP의 불인정은 EC가 원하면 언제든지 덤핑사실을 찾아낼 수 있도록 허용하고 또한 한국기업이 필수적으로 2가지의 회계자료 (Accounting Records)를 유지토록 강요하는 것이다.

(한국의 GAAP와 EC집행위에 의해 채택되는 회계원칙에 준한자료)

문제는 EC집행위가 한번도 A/D 절차 집행에서 사용할 회계 원칙의 개요를 발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DRAMs 케이스의 경우 EC집행위가 채택한 회계원칙의 일부는 일본의 GAAP와 Case Handler의 개인적인 취향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7. VCR 제2차 UT재심

VCR 제2차 UT재심과 관련하여 EC집행위의 재심수정안(Downward Modifications)의 제의에 대해 '92. 5월 26일 ELAK는 업계를 대표해 EC집행위에 Comment를 제출한 바 있다.

EC집행위는 비공식적으로 12%의 UT가격 인하를 허용할 의사가 있다고 언급했다. (ELAK가 과거 2년 동안에 30%의 가격인하를 고려 30%의 UT 가격인하가 타당한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EC집행위는 10% 인하를 제시했었다.)

EC집행위는 또한 추가기능의 시장가격에 관해 한국업체가 제공한 Evidence는 불충분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한국의 제조업체들이 충분한 Evidenc

e을 제공할 수 있을 경우, EC집행위는 이를 고려할 것이다.

따라서 VPS, FST Tuning, RC-LCD기능은 VCR의 Standard 기능이라는 입증자료의 수집이 중요하며, 이러한 입증자료는 EC집행위의 상기 기능에 대한 추가적인 최저가격의 설정을 방지할 수 있다.

8. 한국 및 싱가포르 전자저울 A/D

EC집행위는 '92. 4월 한국산 전자저울(Electronic Weighing Scales)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한국산 전자저울의 대 EC 수출은 단지 2백만\$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소규모 수출물량이 EC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믿기 어렵다. '92. 6~7월 내한 실사가 있을 예정이다.

9. EC 반덤핑 케이스상의 새로운 의사결정 절차

EC집행위에 따르면 현행 확정판정의 진행절차는 완만하다. 협의(Consultations), 조사개시(Initiation of Investigations), 조사종결(Termination of Proceedings Without Measures), 잠정판정(Provisional Measures), Undertakings 수락과 같은 기타 조치는 이번 제안된 의사결정 절차의 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92. 6월 17일 EC집행위는 의사결정 절차의 개정을 제안한 Draft Regulation을 채택했다.

제안된 Regulation은 소위 "On the Harmonisation and Streamlining of Decision Making Procedures for Community Instruments of Commercial Defence and Modification of the Relevant Council Regulations" 이다.

첫째로, 제안된 개정안은 각료이사회가 의사결정을 하지 않도록 배제했으며, 둘째로, EC 집행위와 회원국간에 의견의 일치를 볼 경우

현재보다 최소 1개월 앞당겨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된다.

가장 중요한 개정은 새로운 의사결정의 규정을 규정해 놓은 새로운 조항 즉, Article 12 Bis의 삽입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Article 12 Bis 의사결정 절차(Decision-Making Procedure)

1. 확정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결정은 하기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2. EC집행위는 회원국대표와 집행위 위원장으로 구성되는 위원회(Committee)의 지원을 받게된다.

3. EC집행위 대표는 위원회에 시행안을 제출한다.

위원회는 긴급한 사안에 따라 의장이 규정할 수 있는 시한내에 시행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이러한 위원회의 의견은 각료이사회가 EC집행위의 Proposal을 채택해야 할 경우 EEC 조약 Article 148(2)항에 규정된 다수결에 의하여 각료이사회에 전달된다.

위원회에서 회원국 대표들의 표결은 본 Article에 규정된 방법으로 결정되며 의장은 표결하지 않는다.

4. EC집행위는 즉시 적용될 조치들을 채택하며 이러한 조치들이 위원회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EC집행위는 각료이사회에 이 사실을 통보한다.

5. 이러한 경우, EC집행위는 결정된 조치의 적용을 통보한 날로부터 20일간 연기한다.

6. 각료이사회는 가중다수결에 따라 전 귀결에 언급된 시한내에 다른 결정을 취할 수 있다.

요약하면, 새로운 의사결정 메커니즘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모든 케이스에서 확정 관세부과 여부는 회원국가와의 협의후 EC집행위가 결정한다.
- 회원국이 EC집행위의 결정을 각료이사회에 조회할 자격이 있는 한 각료이사회가

EC집행위의 결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가중다수결 득표가 필요하다.

EC집행위원장은 반덤핑자문위에 부과될 확정관세와 징수될 잠정관세에 관한 Draft를 제출하며 Draft Regulation에 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EC집행위가 의견을 제출할 시한은 긴급사안에 따라 위원장이 정한다. 즉 EC집행위가 어떤 케이스가 “긴급하며” 따라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을 의미한다.

EC집행위는 EEC 조약 Article 148(2) 항에 따라 가중다수결(76표중 54표)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즉시 적용되는 확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EC집행위가 징수하기 원하는 확정관세(와 잠정관세 징수)가 EC집행위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각료이사회와 협의해야 한다.

따라서 각료이사회는 EC집행위가 Proposal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가중다수결로 제시하지 않는 한 의사결정 절차에서 원칙적으로 배제된다.

일단 각료이사회가 역할을 수행케 되면, EC집행위는 20일간 확정관세의 적용을 연기시키며 각료이사회는 20일내에 가중다수결의 표결로 확정 관세부과를 정지시킬 수 있다.

현행 의사결정 절차하에서는 확정관세는 각료이사회가 가중다수결로 부과된다. 즉, 현행 “Blocking Minority” (또는 Qualified Minority로 불림)는 확정관세의 부과를 저지시킬 수 있음을 의미하며 Blocking Minority에 23표가 필요하다.

그러나 새로 제안된 의사결정 시스템에서는 가중다수결 (Qualified Majority) (76표중 54표)은 확정 관세부과(또는 잠정관세의 징수)를 저지시키는데 필요하다.

따라서, 새로운 의사결정 절차의 채택은 한국 수출업체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이다. 현재까지 EC회원국들은 때때로 효율적으로 간

국 가	표 수	국 가	표 수
프 랑 스	10	독 일	10
이탈리아	10	영 국	10
스 페 인	8	벨 기 에	5
네덜란드	5	그 리 이스	5
포르투갈	5	덴 마 크	3
아일랜드	3	룩셈부르크	2

섭 하였으나 새로운 Proposal하에서는 회원국들의 간섭은 매우 어렵다.

우선, 각료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된다.

EC집행위가 회원국 대표들의 가중다수결 의견에 일치하지 않은 확정관세의 부과를 희망하는 경우에만 각료이사회는 역할을 수행케 된다.

둘째로, 각료이사회는 현행 가중소수결(Qualified Minority)이 요구될 경우에만 가중다수결에 따라 EC집행위의 역할을 중지시킬 수 있다.

셋째로, 본 가중다수결은 20일내에 종결되어야하는데 이는 EC집행위에 상당한 권한을 주는 것이며 한국의 수출업체들이 EC회원국에 로비활동을 통해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을 차단 시키는 것이다.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영국, 네덜란드, 독일과 같은 자유무역주의 회원국들은 제안된 의사결정 절차의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EIAK가 이러한 상황을 한국정부와 협의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유사한 의사결정 절차의 간소화를 제안한 Regulations안이 기타 무역정책 Regulations, 즉 Commercial Instrument Regulation과 세이프가드 Regulations으로 승인되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10. 세계 무역협상

EC 정상들은 최근 덴마크의 국민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들이 경제 및 정치 통합에 관한 마스트리히트 조약거부 표결에 놀랐다.

이와 같은 덴마크의 마스트리히트 조약거부

투표는 EC 통합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현지 EC와 미국 통상관리들은 또한 UR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덴마크의 국민투표에 견주어 볼때 Delors EC 집행위원장을 포함한 EC관리들은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어떠한 정책 추진도 극히 삼가하고 있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인준의 결과가 다소 불확실한 여러 EC회원국들에 의해 인준을 받아야 하는데 특히 '92. 9월 국민투표가 실시되는 프랑스에서는 불확실하다.

지난 수일 동안에 프랑스는 최근 채택된 EC 공동 농업정책(CAP) 개혁에 대한 농민들의 반발로 곤욕을 치렀다.

CAP 개혁은 프랑스의 농업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우루과이 라운드 농업부문 협상에서 미국 요구에 대한 굴복으로서 널리 인식되었다.

미국은 UR의 타결을 위해서는 EC가 특히 농업 수출보조금 문제에 아직도 많은 양보를 해야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Delors EC집행위원장과 기타 EC 지도자들은 프랑스의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대한 반대를 야기시키지 않기위해서 '92. 9월 국민투표 이전에 농업부문 협상에서 추가적인 양보를 받아내기 위해 프랑스에 압력을 넣는것을 피해 줄 것을 매우 갈망하고 있다.

따라서, EC가 회원국의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인준 일정의 시한인 최소 9월까지의 EC가 UR협상 진전을 위해 기여할 입장이 아님이 그 어느때보다도 확실한 것 같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EC통상협상자들은 리스본에서 있는 EC정상들의 주말회담('92. 6. 27~28)에서 UR에 관한 협의가 있었음을 주시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러나, 리스본에서 열린 회담과 '92. 7월초 G-7 정상회담에서도 UR협상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G-7 정상회담과 이후 UR협상 타결의 부재는 1993년까지 UR이 연기됨을 의미한다.

11. EC 산업정책과 기타 산업뉴스

영국의 ICL사와 같은 비유럽 업체들이 이미 제안된 보조금을 비난 하였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EC집행위는 '92. 7월 2일 프랑스 정부의 Bull사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승인할 예정이다.

EC집행위는 본 보조금을 정당화될 수 있는 타당한 구조조정을 위한 보조금으로 고려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한편으로, 벨기에의 Siemens사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EC집행위에 의해 불법적인 것으로 판정 되었다.

최근 국가보조금 지원에 대한 합법성(Legality)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유럽의 컴퓨터 업체들로 하여금 국제 경쟁력을 다시 제고키위한 기타의 수단을 강구토록 유도했다.

프랑스의 Group Bull사, 이탈리아의 Olivetti사, 독일의 Siemens-Nixdorf사는 '92. 6월말 새로운 회사인 TEIS사를 설립하였는데 이회사의 설립은 "European Nervous System" 즉, 유럽 컴퓨터 네트워크(European-Wide Computer Network)의 창설을 향해 더욱 진전된 것이다.

TEIS사는 EC가 자금을 지원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이며 회원국에 정보기술 서비스의 이용을 개선시키는 응용기술을 제공할 것이다.

Data Processing 기기의 판매는 공공구매의 형태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92. 6월 17일 열린 EC산업 각료이사회에서 각료들은 비 EC회원국가와의 협력에 관한 협력결의안을 채택했으며 EC집행위는 EC산업과 비 EC회원국가간의 쌍무 또는 지역협력체 구성을 추진토록 지시 받았다.

본 협력은 중소기업육성, J/V지원, 기술지원, 시장개방촉구 등 기업문화와 이익추구의 증진을 포함한다.

12. 미 무역대표부(USTR)의 최근동향

미 USTR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 NAFTA

협상을 담당하고 있는데 USTR의 Nancy Adams와 관리들은 6월 서울에서 한국관리들과 회담을 갖고 지적소유권보호와 무선기술을 포함한 통신분야에 대한 미 생산업체들의 Market Access에 대해 협의 했다.

지적소유권과 관련하여 미 무역대표부는 실질적 권리시행에 대한 효과적인 절차미흡에 불만을 표시했다.

USTR은 신규법이 실질적권리를 인정하지만 침해될 경우 충분한 시정조치가 미흡한데 대한 불만의 표시인데, 특히 지적소유권 침해시 벌과금이 미약하여 미국 업체들이 침해를 당할 경우 한국의 법정은 충분한 분쟁해결 절차를 부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13. IT의 최근 동향

미 ITA는 1M 및 4M에 대한 반덤핑여부를 조사중이며, 설문서를 발급하고, 업체제출자료를 근거로하여 공정가격이하(LESS THAN FAIR VALUE) 판매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미 ITA는 '91. 4. 1~'92. 3. 31기간을 대상으로 C-TV 관련 9차 연례재심을 진행중에 있다.

반덤핑 해제를 원하는 업체는 산업피해 무혐의 및 산업피해 위협에 대한 무혐의를 증명하거나 덤핑마진이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반덤핑 조사에서 한국의 관련업체들은 미국 내 관련산업이 없거나 덤핑마진이 0이거나 DE MINIMIS (0.5% 이하) 임을 증명해야 한다.

생산자 및 판매상이 3년 연속 공정가격이하로 판매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향후 공정가격이하 판매 가능성이 없다는 재심이 이루어진 이후 반덤핑 해제는 가능하다.

생산자 및 판매상이 반덤핑 명령이 발표된 후 3차이후에 생산자 및 판매상이 공정가격이하의 판매가 없거나 향후 공정가격 이하의 판매 가능성이 없음을 증명하게 되면 반덤핑명령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ITA가 명령자체가 당사자들에게 더이상 관

련이 없을 경우나 재심이후 환경변화로 해제근거가 마련하게 되면 반덤핑명령은 해제되게 된다.

최초의 반덤핑명령이후 4년이 지난후 관련당사자의 재심신청이 없거나 해제공고후 관련당사자의 이의가 없으면 반덤핑 명령이 해제된다.

증가세의 0.5%이하의 가중평균 덤핑마진은 반덤핑 제소에서 무시된다. ITA는 미 12개 생산업체로부터 21개국을 대상으로 84건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청원을 접수했다.

ITA는 일본의 전기공구업체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실시중에 있다.

14. 우루과이라운드 (URUGUAY ROUND)

진행사항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은 G7 정상회담 이후로 연기가 되어 정체상태에 있다.

G7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동의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구체적인 협상의 정치적 타협안이 나올 것 같다.

성명서에 따르면 9월에 있을 EC의 Maastricht조약에 대한 프랑스의 국민투표가 있을 때까지 공식적인 동의안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G7회담이후 부시 미 대통령과 메이저 영국수상은 '92년말 타결가능성을 시사, 낙관론이 우세하다.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의 중요성은 2가지 점에 있는데, 첫째, Dunkel총장이 금년말 퇴임할 예정(던켈총장은 우루과이 라운드의 정치적 타결을 위해서 그의 임기를 연장)

둘째, 미국 의회에서 신속처리권한(Fast Track Authority)의 덕을 보기 위해서도 '93년 3월말까지 협정이 타결되어야 한다.

신속처리권한의 연장 또는 기존의 신속처리권한을 벗어나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안을 제출하려는 위험은 최근 하원에서 미국의 환경, 공중위생, 안전 및 근로기준에 위협을 주는 어퍼

한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안에 승인하지 않겠다는 하원과반수 의원의 결의에 잘 나타나 있다.

15. 북미자유무역협정(MAFTA)의 동향

MAFTA 협상은 진행중에 있으며 관리들은 협상안에 8월 1일 정도에 협상팀에 의해 가조 인되어 9월 또는 10월에 공식서명 되기를 희망 하는 말들을 하고 있다.

MAFTA 협정의 주요문제는 에너지, 금융 서비스, 원산지 규정, 섬유 등에 관한 것이다.

미·멕시코 간의 금융서비스 문제는 멕시코의 양보로 원칙적 합의가 이루어져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캐나다도 미·캐나다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의 금융서비스 조항에 대한 개선을 계속 모색 중이다.

특히 미 상업은행의 주간 금융 및 주식투자 활동에 대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미국시장에 대한 캐나다의 호혜접근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원산지 규정에 있어 3개국은 순원가를 근거로 한 현지조달율을 산정한다는 조건으

로 현지조달율 60%를 캐나다는 수락할 방침이다.

환경문제와 관련 MAFTA의 협상안에 환경보호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협상의 나머지 문제는 공공조달과 관세감면의 유예기간인데, 협정안이 이달말 타결되면 3개국의 조인이 필요하게 된다.

많은 캐나다 주정부에서 협정안의 승인을 반대할 지도 모르고 미국에서도 충분한 환경 및 근로보호문제 해결 여부에 따라 승인 여부가 달려있다.

미국의 11월 선거이후 새로운 의원들이 의회에 등원하기때문에 의회의 승인여부는 미정이다.

MAFTA에는 새로운 "가입" 조항이 삽입될 가능성이 있다.

이 조항은 개념적으로 신규가입 국가가 기존의 협정에 서명하는 EC의 가입조항과 동일하며, 향후 칠레와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서명을 규정할 수도 있다.

11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재무장관들은 워싱턴에서 미행정부의 초청으로 워싱턴에서 모임을 가졌다.

